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5월 2일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기영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요약)

1. 점용료 산정기준(안 제3조 별표 1 중 제7호)

(현행)

-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 점용료 산정기준
—————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 노점 점용료 산정기준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개정안)

-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 점용료 산정기준
—————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 “노점” 점용료 산정기준 ——— 토지가격에 0.007를 곱한 금액

2.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의2 관련)

(현 행) : <삭제>

(개정안) : <신설>

- 제9조의2(과태료 부과 · 징수) 구청장이 영 제74조제1항의 별표 5 중 제2호 나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부과기준	과태료 상한금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1호	점용면적 1㎡ 이하 50,000원, 1㎡ 초과하는 매 1㎡ 이내마다 100,000원씩 추가	1,500,000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년 4월 23일(화)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

2013년 4월 27일(토)

4. 관련근거

가. 「도로법」 제38조, 제41조, 제101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나.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74조(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다.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5. 개정이유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개정에 따라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점용료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도로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도로관리 행정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6.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료 요율인하 개정

- 조례안 제3조 별표 1 제7호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밖
에 이와 유사한 것” 중
 - 1)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행 “토지
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으로 조정하고,
 - 2) “노점·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에서 “노점”만을 별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행 “토지가격에 0.02을 곱한 금액”을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으로 인하
(안 제3조 별표 1 중 제7호)

나.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제74조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5 제2호 나목·다목 및 제3호는 대통령령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안 제9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조항과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금액을 150만원으로
정하고자 함.

7. 검토의견

■ 제안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점용료 산정기준” 및 제74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우리구도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도로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도로관리 행정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 도로점용료 요율인하에 대한 검토사항

- 현행 도로점용료의 징수체계는 「도로법」 제41조에서 관리청이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점용료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그 밖에 도로는 대통령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도로법 시행령」 제42조는 별표 2를 통해 국도에 대한 점용료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이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서울시는 2012.7.30자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 별표 1 제7호를 개정하여 2013.1.1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 이에 따라 우리구 조례안 제3조 별표 1의 제7. “노점·자동판매기·상품 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중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행 “토지 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하고,

“노점·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에서 “노점” 만을 별도로 점용료 산정 기준을 현행 “토지가격에 0.02을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최근 경기침체 등 수익성 저하로 보도상 영업시설을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현행 점용료 산정기준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부과비율 인하에 따른 세외수입이 조례개정 전 대비 약 52%에 해당하는 5천 7백만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점용료 산정요율 인하에 따른 세수 변화 예측

(단위:천원)

구분	총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변상금부과 노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2년도	200	108,720	30	17,223	53	20,026	117	71,471
2013년도	194	51,432	28	11,738	52	14,287	117	25,407
증감	$\Delta 57,288$		$\Delta 5,485$		$\Delta 5,739$		$\Delta 46,064$	

※ 조례 개정 후 점용료율 인하에 따른 세수 변화(0.01 및 0.02 => 0.007)

- 2012년 세입 대비 약 5,700만원($\Delta 52\%$) 감소 예상

■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에 대한 검토사항

- 과태료 부과의 경우 「도로법」 제10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도로법 시행령」 제74조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5 제2호 나목·다목 및 제3호는 대통령령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도로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2.11.2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나.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호	상한액 200
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2호	상한액 150

- 따라서 위 표와 같이 「도로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한 별표 5 제2호 중 나목은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의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원인데 반해, 다목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로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위반 행위의 경중에 비해 과태료 상한선 책정이 형평에 맞지 않고, 서울 시는 물론 타구와의 형평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나목의 과태료 상한금액을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우리구 조례안 제9조의2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상위법이나 다른 법 규와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법 적용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9조의2 삭제</u>	<u>제9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이 영 제74조제1항의 별표 5 중 제2호 나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u>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점용물의 종류</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기준단위</th>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점용료 (단위:원)</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점용단위</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기간단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7. 노점 자동판매기·상품전시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u> </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u> </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점용면적 1m²</u> </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u>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노점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u> </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u>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생략)</u> </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생략)</u> </td> </tr> </tbody> </table>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u>7. 노점 자동판매기·상품전시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u>	<u>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u>	<u>점용면적 1m²</u>	<u>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u>	<u>노점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u>	<u>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u>	<u>(생략)</u>	<u>(생략)</u>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점용물의 종류</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기준단위</th>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점용료 (단위:원)</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점용단위</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기간단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7. 노점 자동판매기·상품전시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u> </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u> </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점용면적 1m²</u> </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u>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u> </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1년</u> </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u>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현행과 같음)</u> </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현행과 같음)</u> </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현행과 같음)</u> </td> </tr> </tbody> </table>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u>7. 노점 자동판매기·상품전시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u>	<u>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u>	<u>점용면적 1m²</u>	<u>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u>	<u>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u>	<u>1년</u>	<u>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u>	<u>(현행과 같음)</u>	<u>(현행과 같음)</u>	<u>(현행과 같음)</u>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u>7. 노점 자동판매기·상품전시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u>	<u>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u>	<u>점용면적 1m²</u>	<u>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u>																												
	<u>노점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u>		<u>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u>																												
	<u>(생략)</u>		<u>(생략)</u>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u>7. 노점 자동판매기·상품전시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u>	<u>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u>	<u>점용면적 1m²</u>	<u>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u>																												
	<u>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u>		<u>1년</u>	<u>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u>																											
	<u>(현행과 같음)</u>		<u>(현행과 같음)</u>	<u>(현행과 같음)</u>																											
[별표 2] <신 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의2 관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위반행위</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근거 법조문</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부과기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과태료 상한금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법 제38조 제1항에 따 른 도로점 용허가 면 적을 초과 하여 점용 한 경우</u> </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법 제101조 제2항 제1호</u> </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점용면적 1m² 이 하 50,000원, 1m² 초과하는 매 1m²이내마다 100,000원씩 추가</u> </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1,500,000원</u> </td> </tr> </tbody> </table>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부과기준	과태료 상한금액	<u>법 제38조 제1항에 따 른 도로점 용허가 면 적을 초과 하여 점용 한 경우</u>	<u>법 제101조 제2항 제1호</u>	<u>점용면적 1m² 이 하 50,000원, 1m² 초과하는 매 1m²이내마다 100,000원씩 추가</u>	<u>1,500,000원</u>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부과기준	과태료 상한금액																												
<u>법 제38조 제1항에 따 른 도로점 용허가 면 적을 초과 하여 점용 한 경우</u>	<u>법 제101조 제2항 제1호</u>	<u>점용면적 1m² 이 하 50,000원, 1m² 초과하는 매 1m²이내마다 100,000원씩 추가</u>	<u>1,500,000원</u>																												

※ 관계법령

■ 도로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 제38조(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⑥ (생략)

- 제41조(점용료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1조(과태료) ①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4. 제38조제5항에 따른 관리자의 입회 없이 글착공사를 시행한 자
 5.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 ③~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23, 일부개정]

- 제4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청이 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5 제2호나목·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략)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점용률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 단위	기간 단위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m^2$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노점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제9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이 영 제74조제1항의 별표 5 중 제2호 나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의2 관련)

위반 행위	근거법조문	부과기준	과태료 상한금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1호	초과 점용면적 $1m^2$ 이하 50,000원, $1m^2$ 를 초과하는 때 $1m^2$ 이내마다 100,000원씩 추가	1,500,000원

※ 참고자료

1. 노점 현황

(단위: 건)

구분	총 노점수	변상금 부과 노점			과태료 부과 노점
	총계	소계	노점디자인 특화거리 노점	고착화기준 가설물 노점	기타 노점수
2011년	382	115	61	54	267
2012년	349	117	65	52	232

□ 변상금 부과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계		특화거리노점		가설물노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	115	79,140	61	17,295	54	61,845
2012	117	71,471	65	19,561	52	51,910

□ 점용요율 변경 전·후 부과 금액 비교(예시)

▶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및 노점 점용요율 변경 : 0.01 및 0.02 → 0.007

점용대상물건 (적용지번)	공시지가 (㎡/원)	면적 (㎡)	당초		조례개정안		증감 현황	
			요율 (%)	점용료 (원)	요율 (%)	점용료 (원)	금액	증감 (%)
가로판매대 (도화동559)	17,488,000	3.92	0.01	685,520	0.007	479,870	205,650	△30
구두수선대 (노고산동1-1)	12,208,000	4.48	0.01	546,910	0.007	382,840	164,070	△30
노점 (공덕동256-4)	3,648,000	10	0.02	729,600	0.007	255,360	474,240	△65

* 산출근거 : 인접지 공시지가 × 점용기간(1년) × 점용면적(㎡) × 요율(%)

2.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천원)

구분	계		2011년		2012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과태료	1,323	214,050	753	121,180	570	92,870

※ 과태료 150만원 이상 부과 내역

▶ 2011년도(4건) : 720만원 ▶ 2012년도(2건) : 300만원